

이달의 칼럼



이 창 현

-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변호사(형사법)
- 주요 저서
 - 형사소송법(제9판)
 - 사례 형사소송법(제6판)
 - 형사소송법 핵심판례 110선(공저)
 - 형법판례 150선(공저)

사형집행은 누구 책임인가

살인죄로 1심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시원하게 사형을 한번 딱 내려달라.”고 하였고, 실제 사형선고가 되자 손뼉을 치며 “검사놈아, 시원하지.”라고 했단다. 피고인은 수차례 살인과 살인미수로 합계 29년 8개월간 수감생활을 하고 출소한 지 1년 1개월 만에 또 살인을 하여 재판을 받았다. 왜 이렇게 재판이 조롱거리가 되고 계속 피해자들만 억울하게 죽는가.

최근 무기징역형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피고인이 같은 방 재소자를 또 살해하여 하급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는데도 대법원에서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이라고 하면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사형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 한해 비로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며 파기하고 말았다. 이렇게 사형선고는 하늘에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렵지만 수십 년째 사형집행이 되지 않다보니 사형확정판결조차도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게 되었다. 사형 확정 후 오랫동안 집행을 하지 않다 보니 집행면제로 석방해야 할 지경에 이르러 급히 형법에서 사형의 경우

에 30년이란 형의 시효규정까지 삭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사형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집행하고,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해야 한다. 위 규정의 성격에 대해 혼시규정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법무부 장관은 확정된 재판의 내용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 불과하므로 기속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2회나 사형제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가 있고, 현재도 심리 중이라고 하지만 혹시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이미 합헌결정 전에 사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사형집행이 되지 않으니 사형선고도 거의 불가능하게 된 이 현실이 과연 인권선진국의 바람직한 모습인가. 사형집행은 누구의 책임인가. 법원은 판결만 선고하면 그만인가. 역대 정부에서 사형집행이 계속되어 1997년 12월 김영삼 정부에서도 23명에 대해 집행이 이루어졌으나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멈춰지다 보니 허울만 좋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가 되고 말았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사형집행을 하게 되면 통상압박을 엄청 받게 된다고 하지만 미국,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에서조차

매년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궁색한 변명이라는 의문이 들고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도 상한다. 공여지책으로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아 교도가 불가능한 자들을 수용해야 하는 교도행정의 어려움은 어떻게 할 것이며, 오히려 사형집행이 더 인권친화적일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 정도가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고, 싱가포르에서 아동납치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도입하였더니 아동납치사건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을 보면 사형제가 범죄억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이 분명하다. 최근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죽거나 심하게 다치고 국민들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국가에서 이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최소한 범인검거와 엄중한 처벌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국민인선량한 피해자들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저작권자/법률신문)